

의안 번호	246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8. 2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8. 2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9. 5.(금)

2. 제안이유

- 장기근속을 이유로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내·외 연수 지원 등의 일률적 관행 개선을 위해 해당 지원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3조 제2항1호)
- 장기근속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 삭제(안 제7조4호)

4. 근거법규

- 「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19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‘가사휴직’ 을 ‘가족돌봄휴직’ 으로 변경하고,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내용 중 ‘장기근속 우수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·내외 연수 지원 규정’ 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- 장기근속을 이유로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일률적 관행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및 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.
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

지방공무원 임용령

- 제38조의19(가족돌봄휴직)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: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. 다만,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, 고령(高齡),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.
 2.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: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. 다만,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, 고령,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.